



제 42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증빙서류 확대 및 자료제출요구 실효성 확보〉

■ 박준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72호)

2025.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임명동의안등 증빙서류 범위 확대	3
2. 자료제출요구 실효성 확보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준태 · 박충권 · 조지연 · 조배숙 · 곽규택 · 추경호
장동혁 · 조경태 · 송석준 · 김용태 · 최수진 · 임종득
구자근 · 강대식 · 인요한 · 유상범 · 김선교 · 배준영
김희정 · 이종배 의원(20인)

2. 제 안 일 : 2025. 6. 20.

3. 회 부 일 : 2025. 6. 23.

※ 의안번호 : 1097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제도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여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후보자의 학업 · 직업 · 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 등 최소한의 증빙 서류만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자질 검증을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수적

인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후보자나 관련 기관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임명동의안등 증빙서류 범위 확대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 첨부되는 증빙서류에 공직후보자의 ① 출입국에 관한 사항, ② 외국환거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②·③ (생략)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출입국에 관한 사항</u> 7. <u>외국환거래에 관한 사항</u>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5조1)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임명동의안등을

1) 「인사청문회법」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 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출할 때 ①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② 병역신고사항, ③ 재산신고사항, ④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²⁾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⑤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⑥ 출입국에 관한 사항, ⑦ 외국환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 -2]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제1항 각 호 (임명동의안등 증빙서류 내역)	개정안 제5조제1항 각 호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좌 동)
○ 병역신고사항	
○ 재산신고사항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 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신 설>	○ <u>출입국에 관한 사항</u>
<신 설>	○ <u>외국환거래에 관한 사항</u>

개정안에서 증빙서류로 추가하는 사항들은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재산형성 과정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활용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음.³⁾

2)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이후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나,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에서는 ‘종합토지세’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공직후보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위장전입 등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검증에 있어 직간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외국환거래에 관한 사항은 해외송금, 해외계좌 거래, 역외탈세 또는 증여세 탈루 등 재산형성 과정의 적정성·적법성 판단에 있어 증거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을 임명동의안등의 증빙서류에 포함시킴으로써 국회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출입국 및 외국환거래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기 전까지 과거의 모든 출입국 사실 및 외국환거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공직후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효적인 인사검증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적정하고 유효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현행법상 증빙서류 첨부 대상의 시간적 기준은 병역신고사항의 경우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이고, 재산신고사항의 경우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실무상 공직후보자 내정일 현재)이며,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의 경우 ‘최근 5년간’임.

3)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환거래법」 제2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받는 외국환거래의 경우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으므로,⁴⁾ 「인사청문회법」과 「외국환거래법」 간 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두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공직후보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공직선거후보자등록을 할 때 학력·선거경력, 병역사항, 재산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사항, 범죄경력사항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⁵⁾ 출입국사항 및 외국환거래사항은 제출서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4)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仲介)·중계(中繼)·집중(集中)·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5)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公職選舉候補者 등의 財産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公職選舉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점을 감안하여 공직선거후보자와 공직후보자 간 제출서류 범위의 일관성·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3] 개정안의 공직후보자와 「공직선거법」의 공직선거후보자 간
제출서류 비교

개정안 제5조제1항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학력·선거경력에 관한 사항
○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 좌동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 최근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혼인한 딸 및 외가 제외)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내역. 이 경우 공직선거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신고 거부 가능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출입국에 관한 사항	
○ 외국환거래에 관한 사항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2. 자료제출요구 실효성 확보

개정안은 ①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추가하고, ②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료제출 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며, ③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표-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u>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u> ,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u><신설></u>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 ----- ----- <u>공직후보</u> <u>자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u> -----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u>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료제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공직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u>제출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u>기관</u>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u>제출하지 아니한</u>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u>기관</u>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u>제출하지 아니한</u> 때에는 <u>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u>.	③ ----- ----- -----제출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소명을 하여야 한다. ④ ----- -----공직후보자 또는 기관은 제3항-----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하지 아니한----- -----, ----- ----- -----. ⑤ ----- -----공직후보 자 또는 기관이----- 제3항-----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하 지 아니한-----공직후보자 또는 해 당 기관에 이를 경고하거나 관계자 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요구를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에 경고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이 공직후보자의 부동의나 다른 법률상 비밀유지의무 등⁶⁾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속력 있는 제재도 불가능하여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추가하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료제출 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은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명확히 열거하며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여 자료제출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료제출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의 적시 확보를 통한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6조⁷⁾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의 거

6)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등

7) 「인사청문회법」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부 주체로 공직후보자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추가하는 것은 체계정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⁸⁾ 그간 실무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등 제출 의무와 개별법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다른 법률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사생활의 비밀·침해 염려 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⁹⁾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개정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인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료제출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소명하는 경우 외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둘째, 법제적 측면에서, 자료제출 거부 사유가 개정안 제12조제2항과 현행법 제16조¹⁰⁾에 분산 규율되어 있는데 이를 일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¹¹⁾

셋째, 인사청문회의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¹²⁾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9)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24헌나 전원재판부[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10) 「인사청문회법」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11) 추가로, 개정안의 자료제출요구 대상 확대, 소명절차, 징계 등 요구, 증빙서류 범위 확대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마련하는 것이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바람직함.

12)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02호),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86호),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19호)